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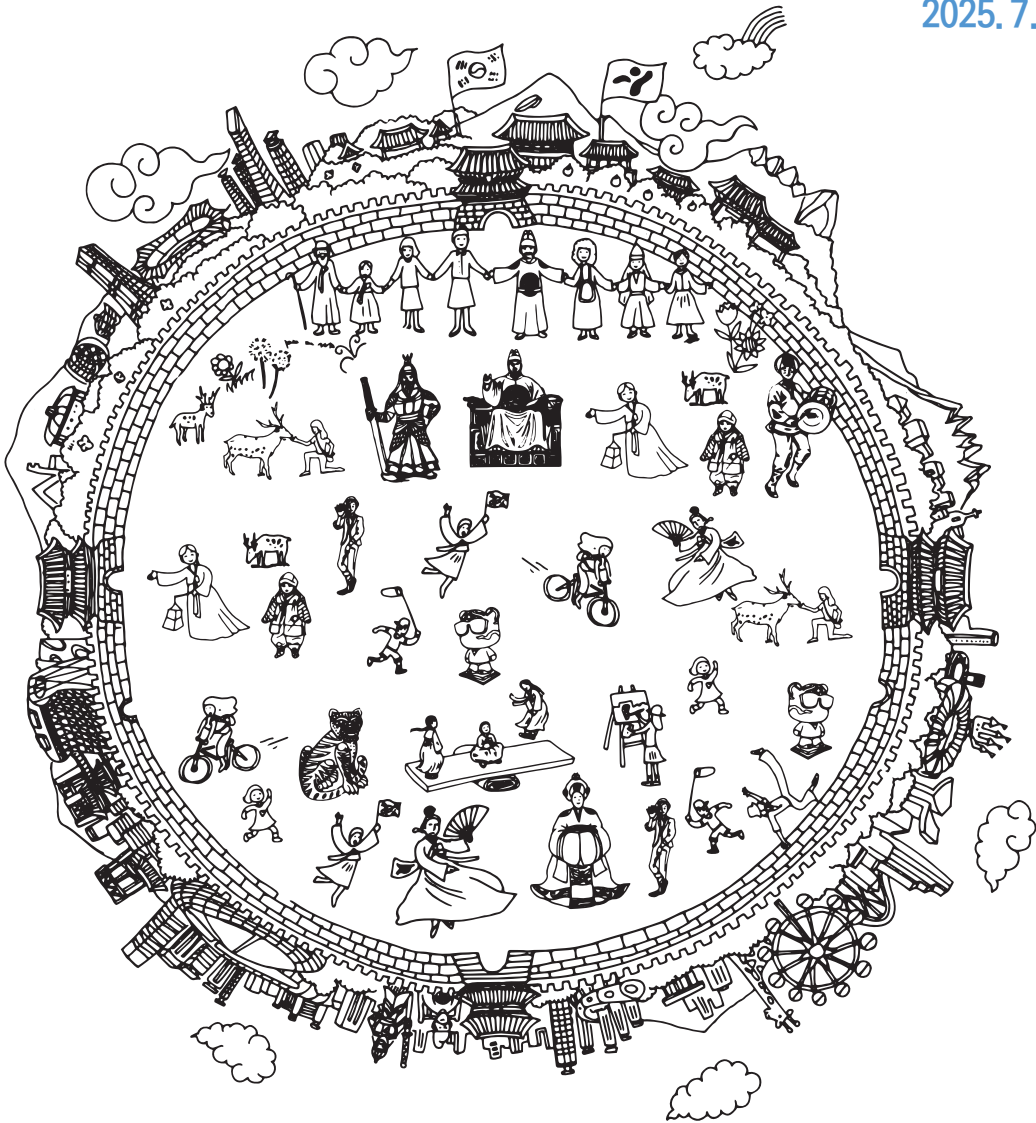
동행·매력
특별시 서울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4079호(그2)
2025. 7. 17.(목)



목 차

◆ 서울특별시교육청

[조 례]

제9703호	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	2
제9704호	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	4

서울특별시교육청

[조 례]

◆ 서울특별시조례 제9703호

**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
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**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」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

2025년 7월 17일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인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
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3.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
4.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1. 개정이유

- 가. 「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」이 2024. 11. 8. 개정되어 교육공무원 선정 경쟁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가 확대됨
- 나. 이를 반영하여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,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“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”에 대해서도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응시자의 금전적 부담 경감

2. 주요내용
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,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“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”에 대해서도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(제3조 제1항)

◆ 서울특별시조례 제9704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」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

2025년 7월 17일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7의 동작관악교육지원청(25교)의 동작구(9교)의 서울상도유치원의 위치란 중 “만양로3길 48”을 “성대로21길 62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— 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 —

1. 개정이유

2025. 9. 1.자 유치원 1개교(서울상도유치원) 위치 이전

2. 주요내용

☐ 유치원 위치 변경: 1개교

○ 서울상도유치원: 동작구 만양로3길 48 → 동작구 성대로21길 62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